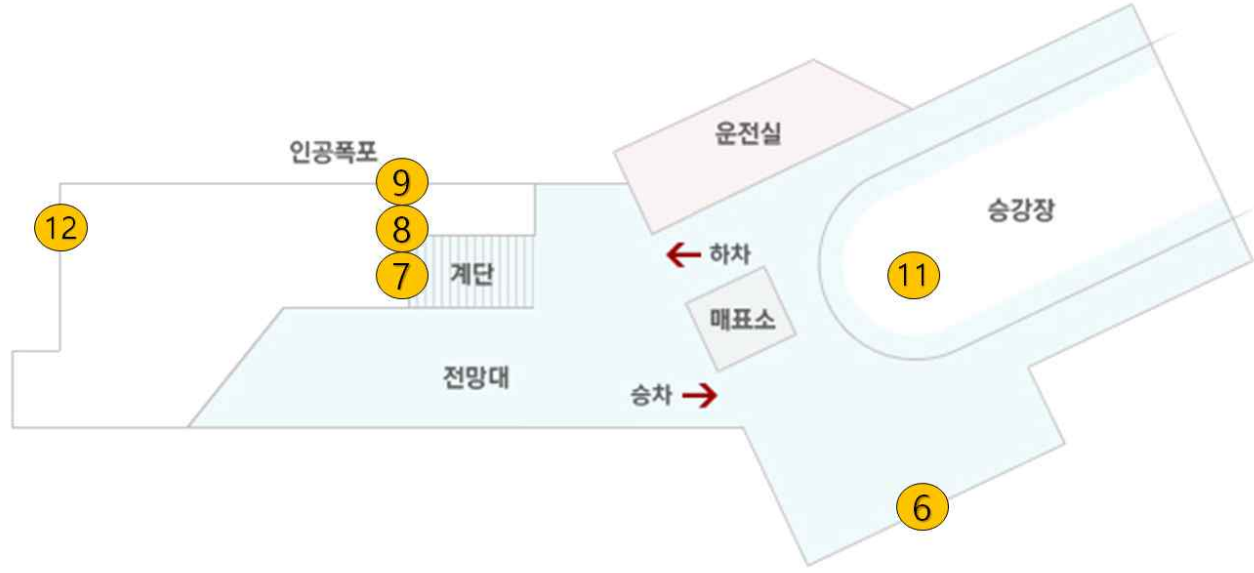


통영케이블카 광고물 위치도



케이블카 상부역사 광고물 위치도



케이블카 하부역사 광고물 위치도

통영 케이블카 광고물 현황

순번	위 치	규 격	면적 (㎡)	조명 여부	광고유형	수량 (개)	비 고
1	곤돌라 외부(옆면)	0.8m×0.8m (2면)	60.16	X	PVC CAL	1	사용수량 35대
2	곤돌라 내부(옆면)	0.8m×0.4m	15.04	X	PVC CAL	1	사용수량 35대 2020. 1. 1. 이후 사용가능
3	곤돌라 내부(의자위)	1m×0.1m (2면)	9.40	X	PVC CAL	1	사용수량 35대
4	곤돌라 내부(상단)	0.8m×0.15m	5.64	X	PVC CAL	1	사용수량 35대
5	곤돌라 외부(바닥)	1.3m×1.2m	73.32	X	PVC CAL	1	사용수량 35대
6	상부역사 (탑승장)	11m×1m	11.00	X	비조명형	1	2020. 1. 1. 이후 사용가능
7	상부역사 1층	2.5m×1.7m	4.25	0	조명형	1	-
8	상부역사 1.5층	3.1m×2.5m	7.75	X	비조명형	1	-
9	상부역사 2.5층	3.1m×2.5m	7.75	X	비조명형	1	-
10	상부역사 3.5층	3.1m×2.5m	7.75	X	비조명형	1	-
11	상부 활차기둥	2m×2m(2면)	8.00	X	포맥스부착	1	-
12	상부 엘리베이터실	1.5m×15m	22.50	X	비조명형	1	-
13	하부역사 (1층) 1	2.5m×1.7m	4.25	0	조명형	1	-
14	하부역사 (1층) 2	2.5m×1.7m	4.25	0	조명형	1	-
15	하부역사 (1층) 3	2.5m×1.7m	4.25	0	조명형	1	-
16	하부역사 (1층) 4	2.5m×1.7m	4.25	0	조명형	1	-
17	하부역사 (1층) 5	3.5m×2.5m	8.75	0	조명형	1	-
18	하부역사 (1층) 6	3.5m×1.7m	5.95	0	조명형	1	-
19	하부역사 (탑승장) 1	3.5m×1.7m	5.95	X	비조명형	1	-
20	하부역사 (탑승장) 2	6m×3m	18.00	X	비조명형	1	-
21	하부역사 (탑승장) 3	6m×3m	18.00	X	비조명형	1	2019. 6. 1 이후 사용가능

순번	위 치	규 격	면적 (㎡)	조명 여부	광고유형	수량 (개)	비 고
22	하부역사 [1층] 7	3.5m×1.7m	5.95	0	조명형	1	19. 10. 16 이후 사용가능
23	하부역사 [1층] 8	1.5m×1.7m	2.55	0	조명형	1	20. 1. 1 이후 사용가능
24	하부역사 [1층] 9	3.5m×1.7m	5.95	0	조명형	1	-
25	하부역사 [1층] 10	3m×5m	15.00	0	조명형	1	-
26	하부역사 [1층] 11	2.5m×1.7m	4.25	0	조명형	1	-
27	하부역사 [1층] 12	1.5m×2m	3.00	0	조명형	1	-
28	하부역사 [1층] 13	2.5m×1.7m	4.25	0	조명형	1	-
29	하부역사 [1층] 14	2.5m×1.7m	4.25	0	조명형	1	-
30	하부역사 [1층] 15	2.5m×1.7m	4.25	0	조명형	1	19. 9. 1 이후 사용가능
31	하부역사 [1층] 16	2.5m×1.7m	4.25	0	조명형	1	-
32	하부역사 [1층] 17	2.5m×1.7m	4.25	0	조명형	1	-
33	하부 활차기둥	5m×2m(2면)	20.00	X	포맥스부착	1	-
34	하부 선로 잔디밭	7m×10m	70.00	X	비조명형	1	-
35	하부 정비고 전면	12m×2m	24.00	X	비조명형	1	-
합 계			478.16			35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사용대상 :
 - 사용수량 :
- 사용기간 :
- 사용목적 :
- 사용료 : 귀 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조건 : 귀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 귀하

광고물 설치 및 운영 시 주요 유의사항

□ 광고물 설치기준

- **광고물**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 또는 동규칙 제7조의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함**
 - * 스틸, 알루미늄, 방염시트지 등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 사용
 -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방염필증**) 및 사용자재 내역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공사 제출
- **광고물 설치시 벽면으로부터 5CM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모서리는 직각이 되지 않도록 해야함**
 - * 광고물 설치시 광고판이 탈락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하고, 광고물 두께 5cm 초과시 매립하여 설치
 - ** 광고물 제작시 모서리를 45도 경사지기 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통해 모서리가 직각이 되지 않도록 처리
 - ※ 기타, 광고물 설치기준은 관련법령 및 통영관광개발공사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 광고물 설치 및 철거·이설 방법

* 시설물 설치·철거 및 운영 관련 제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 **광고물**의 사양, 디자인, 구조도, 자재, 기능, 설치 및 철거방법, 지장물 이설방법, 작업일정 등에 대한 **제작 및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작 및 설치, 철거, 이설 추진**
- **설치 및 철거, 시설물 보수, 광고물 교체 작업**은 케이블카 이용고객 안전 및 건물 내부 점포운영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지정시간 준수** * 야간(21:00 이후)에 시행하며,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광고물 운영 및 유지관리

- **성평등 실현을 위해** 광고 수주, 제작 등 업무수행시 **광고물에 대한 성인지 관점을 고려해야 함**
- **광고물 게재첨시 시안 및 작업일정 등 세부내역을 포함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세부내역 : 광고명, 광고주, 위치, 광고기간, 광고시안(사진), 작업일정, 작업책임자 등
- 케이블카 이용고객 안전 및 유지관리상 위해가 없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 시행**

성인지 관점 고려 확인서

당사는 통영관광개발공사로부터 허가받은 통영 케이블카 광고사용권과 관련하여,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평등 실현을 위한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 광고 수주, 제작 등의 업무 추진 시 아래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1.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1.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1.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1. 신체의 일부를 특정성과 연관시켜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있는가
1.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1.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대응방식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가
1. 피해자를 부정적, 소극적 시각(혹은 회화화) 으로 바라보거나 폭력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하는가
1. 여성 / 남성 또는 특정 연령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는 않는가
1. 가족 구성원을 한정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구축하고 있는가
1. 가족 내 역할을 고정하고 있지 않는가

○○○○년 ○○월 ○○일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허가조건

제1장 총칙

제1조(사용목적)

공유재산의 사용목적물 운영사업자인 “사용인”은 본 허가서 조항 등에 의하여 동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하여 관련법령 및 허가조건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허가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사용목적물』이란 허가의 목적물이 되는 “사용허가기관”의 시설물과 허가조건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 및 이에 부대하는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 『사용료』란 사용인이 사용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납부해야 할 금액을 말한다.
- 『사용허가기관』이란 사용목적물에 대한 유상사용허가를 하는 통영관광개발공사를 말한다.
- 『“사용인”의 피고용인』이란 공유재산의 사용목적물 내에서 “사용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고용원 및 기타 “사용인”의 영업에 관련된 일체의 종사자를 칭하며, “사용인”은 그 피고용인에 대하여 노동법규 및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3조(사용목적물 현황)

사용목적물은 벽면광고 00개로 총면적은 478.16㎡이며, 세부현황은 별첨 1로 한다.

제4조(허가기간)

허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년간)로 한다.

제 2장 사 용 료

제5조(사용료 산정)

① 첫해의 사용료는 낙찰금액인 금_____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다.

※ 2차년도 이후 사용료의 산출

$$\begin{array}{ccc} \text{입찰로 결정된} & & \text{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text{첫째년도의 사용료} & \times & \frac{\text{입찰당시의 재산가격}}{\text{입찰당시의 재산가격}} \end{array}$$

② 재산가격은 매년 사용 시작일전 “사용허가기관”이 의뢰한 원가조사기관에서 산정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사용인”은 허가받은 사용목적물 외 프로모션 및 랩핑광고를 “사용허가기관”의 승인하에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사용료는 “사용허가기관”이 의뢰한 원가조사기관에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사용일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 등)

① 최초년도 사용료는 계약체결일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2차년도 이후에는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1년분 전액을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출하되 사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연액으로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

③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일할 계산하여 고지한다.

④ 사용료의 미납으로 3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는 무효가 되고, 기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관련법령에 의거 귀속 조치하고, 당해 시설물은 입찰에 부친다.

- ⑤ 사용료를 납부고지하거나 수납한 이후에 계산, 기준적용 등의 오류가 발견 될 때에는 이를 증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 사용료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정해진 이자를 붙여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시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지급이행보증금 또는 증권을 선납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비 등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목적물의 운영에 있어 전기료 등 관리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허가기관”이 산정한 방법에 의거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장 계약보증금

제8조(계약보증금)

-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보증 및 이행을 위하여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사용허가기관”에게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시 보증기간의 초일은 사용허가기간 개시일(2차년도 이후는 갱신사용 시작일), 만료일은 매년 갱신사용 종료일(사용허가 마지막 해는 사용허가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후로 한다.
- ③ 계약보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사용목적물은 새로운 사용인 선정 절차를 거친다.
- ④ “사용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관련법령에 의거 조치한다.
- ⑤ “사용인”은 계약보증금으로 사용료 등 기타 각종 비용의 지급에 대체할 수 없다.
- ⑥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관”에게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사용기간 종료 후 관리비 등 각종비용과 기타손해배상, 기타 사용허가서상의 채무 등 “사용허가기관”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 등이 체납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

고 그 잔액을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으로 전부를 청산할 수 없을 경우 “사용인”은 그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4장 관 리 · 운 영

제9조(허가받은 업무의 범위)

“사용인”이 허가받은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허가 받은 범위내 사용목적물의 제작 및 설치
2. 사용목적물의 게, 폐첩 등 전박적인 광고 대행
3. 사용목적물(전등 등 전기시설물 포함)의 보수 및 철거
4. 사용목적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제10조(사용목적물 유지관리)

① “사용인”의 영업에 필요한 사용목적물과 설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인”의 부담으로하며 사용목적물의 설치 또는 변경 시 “사용허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목적물의 신설 또는 변경은 본래 구조물을 변경·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은 설치와 동시에 “사용허가기관”에게 기부채납된 것으로 한다.

③ “사용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도면 및 사업계획을 첨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목적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허가기관”이 지정한 책임자가 시공에 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사용목적물의 게·폐첩 또는 교체 및 규격변경
2. 사용허가 받은 사용목적물의 장소 변경
3. 사용허가 받은 사용목적물 외 추가 설치

제11조(손해보험 등의 가입)

① “사용인”은 사용목적물에 대하여 “사용허가기관”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

여 사용목적물에 대한 (화재)손해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사용허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재)손해보험은 사용목적물의 낙찰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용목적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정한 보상한도를 적용한다.

③ “사용허가기관”이 당해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이미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납부한 경우,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허가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통지의무)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사용허가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 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사용인”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3조(시민서비스)

① “사용인”은 사용 목적물의 설치 및 교체등의 작업 시 케이블카 이용객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인”은 기타 시민 불편·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장 준 수 사 항

제14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용목적물 일체를 사용 또는 유지·관리함에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목적물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제15조(책임과 의무)

- ① “사용인”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 사항을 영업개시일 전에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 및 “사용인”의 피고용인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인”은 화기 및 전기·수도시설 등 제반 설치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사용인”은 사용목적물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는 항상 확보하여야 한다.
- ⑤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관”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정보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⑥ “사용인”은 허가 받은 사용목적물의 관리·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재산상 또는민·형사상 피해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을 진다.
- ⑦ “사용인”은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허가기관”의 경영 및 기술상의 정보 등을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허가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행위제한)

-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관”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사용목적물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사용목적물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사용목적물의 범위를 넘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② “사용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술, 담배, 대부업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2. 음란, 도박 등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3.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심령술 등의 광고
 4. 타인의 저작권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광고

5. “사용허가기관” 또는 특정인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광고
6. 성형광고 등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회 일반통념상 시설물 환경 및 관리운영에 저해되는 일체의 광고

제6장 허가의 변경, 해지 및 명도

제17조(사용목적물의 변경)

“사용허가기관”은 필요한 경우 허가 사용목적물의 위치, 수량(면적), 형태, 철거 등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시설공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사용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사용허가기관”이 보상할 수 있다.

제18조(허가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관”은 이 허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인”이 연간 사용료(분납 시 포함)를 정해진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3개월 연체한 경우
2. “사용인”이 사용목적물을 “사용허가기관”의 승인 없이 전대, 공동운영, 양도 하였거나 담보설정을 하였을 때
3. “사용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사업의 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본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허가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폐점하는 경우
5.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관”에게 발행, 배서, 인수, 보증, 교부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된 경우
6. “사용인”이 상표법, 저작권 등 지식재산법규, 공정거래 관련법규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사용허가기관”의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7. “사용인”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민·형사상 문제로 인하여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
8. 본 허가서 제15조(책임과 의무), 제16조(행위제한) 및 제21조(공증)를 위반한 경우
9.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에 “사용허가기관”이 필요할 때
10. 3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11. “사용인”이 당좌거래 정지,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12. “사용인”이 제3자와의 채권 채무관계로 제소되어 상품 등이 압류당하여 허가 이행이 불가할 경우

제19조(허가 취소요청)

- ① “사용인”은 허가기간 중 사용목적물의 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2개월 전에 사용허가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의 요청으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시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등은 관련법령에 의하며, 이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허가기관”은 이를 배상하지 않는다.

제20조(명도)

- ①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허가기관”의 기본시설을 제외한 “사용인”이 부가한 시설물 등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명도계획서를 “사용허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8조(허가취소)에서 정한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본 허가가 해지된 경우와 허가 종료 이후 “사용허가기관”이 지정한 명도일까지 사용허가 받은 사용목적물이 원상회복 및 명도되지 않은 경우 계약보증금은 “사용허가기관”에게 전액 귀속된다.

제21조 (제소전 화해 등)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사용인”의 준수 의무를 기재한 사용허가시설의 명도에 관한 제소 전 화해신청에 응하거나 「공증인법」 제56조의3에 의한 강제집행 수락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2조(연체료의 징수)

① “사용허가기관”은 “사용인”이 사용료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② 1항에 의한 연체료는 지정기일 다음 날부터 일할계산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료율을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

제23조(변상금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허가시설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사용허가취소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조문해석)

① 본 허가서에 약정한 조문의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기관”과 “사용인”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여 상호간에 성실히 협의하여 정한다.

② 본 허가서에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법령의 규정과 계약관습을 따르기로 한다.

제25조(재판의 관할)

① 본 허가조건의 이행 중 “사용허가기관”과 “사용인”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위해 상호 성실히 노력한다.

② 본 허가와 관련한 소의 제기 시 관할 법원은 공유재산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6조(일반법령의 적용 등)

- ①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및 기타 계약관련 법령 등을 따르기로 한다.
- ② 본 허가조건 각 조항의 해석상 상호간에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합의하여 결정하며,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